

제공일자	2009. 6. 23	담당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13	총 2 매

제목 :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퇴직연금시장, 자기은행예금의 퇴직연금 운용 허용으로 불공정경쟁 심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은행이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이 과열되고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어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행예금 퇴직연금 운용 허용 등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금융권 간의 차별규제 문제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규정(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이 은행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입법취지 및 수탁자의 충실의무(근로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하여야 할 의무)와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 관리, 근로자의 운용자산 선택 폭 확대 차원에서 자행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자금이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 자산간의 리스크 전이 개연성이 크고,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 증대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자금의 자행예금 편입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파산리스크 : 은행자체의 리스크가 자행예금에 미치는 리스크

* 금리리스크 : 확정된 금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금리변동시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둘째, 자행예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금지 : 제4-94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동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합리”라는 용어가 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금리 제시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정 되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수익률에 의해 좌우되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률 이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사용자가 어느 기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업자 선정이유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 재정립, 규정 위반 시의 제재조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